

[변경 대비표]

1. 펀드명 : 우리 템플턴 이스턴 유럽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2. 효력발생일 : 2022.08.05

3. 정정사유

- ① 부책임용전문인력 삭제
- ② 이익분배 조항 변경(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)
- ③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
- ④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
<집합투자규약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매매, 평가 이익 유보	제33조(이익분배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	제33조(이익분배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.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

<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[요약정보] 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-	[요약정보] 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부책임용전문인력	[요약정보] 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용전문인력: 윤수로	[요약정보] 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용전문인력: 삭제

삭제		
부책임용 전문인력 삭제	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나. 부책임용전문인력: 윤수로	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나. 부책임용전문인력: 삭제
기준일자 변경에 따 른 업데이 트	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 13. 보 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제3부. 집합투 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 항, 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-	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 13. 보 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제3부. 집합투 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 항, 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매매, 평가 이익 유보	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배분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익금 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 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 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.	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배분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집합투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 이 "零"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 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 니다. 1)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 산의 평가이익 2)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 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

<간이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기준일자 변경에 따 른 업데이 트	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 용전문인력 -	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 용전문인력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부책임용 전문인력 삭제	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용전문인력: 윤수로	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용전문인력: 삭제